

## 1

## 공통사항

##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lt;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gt;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 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름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지 변경, 농업분야 중복 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 지원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 \* 조합원·농업인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 등기대상 시설물의 경우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소유의 토지여야 함
  -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①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당해 개인, 법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양묘생산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받은 자
- 톱밥배지 생산시설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 톱밥배지 생산시설 신규 및 보완시설에서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 우선 지원 >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장 안병기 서기관 고락삼 사무관 신경수 주무관 황상훈 주무관 이은경	042-481-4190 042-481-4194 042-481-4208 042-481-4209 042-481-4196

## 1.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

내역 사업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	70	20	-	10	-	
- 유기질비료지원	3,500 (원)	1,500 (원)	-	잔액	-	혼합유박
	800~ 1,400 (원)	600 (원)	-	잔액	-	4종
나.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나-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 공모사업	40	20	-	40	-	
- 소액사업	20	20	20	40	2.0%, 3년/7년	
나-2.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	
- 공모사업	40	40	-	20	-	
- 소액사업	20	20	20	40	2.0%, 3년/7년	
나-3. 밤대체작목조성	40	20	-	40	-	'18년 종료사업
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	
라.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 생산기반조성	20	20	20	40	2.0%, 3년/7년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예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의 사업일 경우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사업추진)

## 2.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가**

###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70 또는 정액	20 또는 정액	-	10 또는 진액	~전년도 1월20일

#### ○ 사업 목적

-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 억제로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 지원 조건 및 단가

구 分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토양개량제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유기질비료	-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단위: 원/20kg)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국고</th> <th rowspan="2">지방비</th> </tr> <tr> <th>특등급</th> <th>1등급</th> <th>2등급</th> </tr> </thead> <tbody> <tr> <td>유기질비료</td> <td>(혼합유박) 3,500</td> <td></td> <td></td> <td>1,500</td> </tr> <tr> <td></td> <td>(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td> <td>1,400</td> <td></td> <td></td> </tr> <tr> <td>부숙유기질비료</td> <td>1,100</td> <td>1,000</td> <td>800</td> <td>600</td> </tr> </tbody> </table>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3,500			1,500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600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3,500			1,500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4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600																				

#### ○ 지원 한도

구 分	지 원 한 도
토양개량제	(수실류) 밤 :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국고보조 3,325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국고보조 805천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유기질비료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사업 유의사항】

#### ○ 공모사업

- (사업대상) '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 '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추진
  -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
- (사업비율)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산림경영소득과-1618, '14.3.28)에 따라 처리
  - \* 토목 공사비 : 기반 조성비의 10% 이내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기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 부대비에서 집행
- (기타)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품셈(안)을 참고·활용하여 사업 지원
  - \* 산림청 홈페이지 > 분야별산림정보 > 통합자료실 > 통합자료실

####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공모 및 소액)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반드시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
  -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 가능

구 분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비 고
인건비	2018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별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속아베기 등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적용	
표고목 구입	(지원 대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구 분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비 고
	<p>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노지)하고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li> <li>* 기존 산림복합경영 사업자가 표고목 단일 종목 으로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으로 신청 가능(보조율 형평성 유지) (지원 비율)</li> <li>-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 (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li> <li>-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20%), 융자 (20%), 자부담(40%)</li> </ul> <p>(지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당 금액 : 4,852원(W 12cm × L 120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li> </ul> </li> <li>- 면적당 본수 : 1,000본/330㎡</li> <li>- 지원 한도 : 사업별 지원한도 범위 내</li> <li>* 공모사업은 표고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 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li> <li>*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고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 (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18년 이전 사업대상자도 적용)</li> </ul> <p>*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산림 청 고시 제2016-79호) 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 가격 적용</p>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p>(지원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인, 생산자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 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li> <li>*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li> </ul> <p>(지원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 (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li> <li>- 소액사업 : 국고(20%), 지방비(20%), 융자 (20%), 자부담(40%)</li> </ul> <p>(지원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당 금액 : 1,000원(W 30cm × L 20cm)</li> <li>- 면적당 본수 : 36본/㎡(총적 또는 재배상 기준)</li> <li>- 지원 한도 : (임업인) 5,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10,000본 이내</li> <li>* 공모사업은 꽃송이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 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li> <li>*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송이목 단일 품목 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li> </ul>
복령버섯 자목 구입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인, 생산자단체</li> </ul>	

구 분	지 원 조 건 및 지 원 단 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li> <li>*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원에 의거 지원 (지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사업 :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에 포함하여 지원</li> <li>- 소액사업 : 국비(2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40%)</li> </ul> </li> <li>(지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당 금액 : 2,000원(W 15~20cm × L 30cm)</li> <li>- 면적당 본수 : 577본/330㎡</li> <li>- 지원 한도 : (임업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사업은 복령 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li> <li>*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령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li> </ul>
송이산 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 적용	
생산장비 (건조기, 방제장비)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관수시설	(스프링 클러) 6,000천원/0.5ha (점적) 4,500천원/0.5ha	*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관정개발 (6인치, 일반형)	9,400천원/공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견적서 2개 이상 기준
모노레일	1,500천원/0.5ha	"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식물)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관리사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 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li> <li>*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li> </ul>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시설규모 100㎡ 이내로,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100백만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li> </ul>	

## 나-1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구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인), 생산자단체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40%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신청기간	전년도 4~8월	~전년도 1월20일
사업 목적	임업인(전문임업인 · 생산자단체)에게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 · 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원 내용	(약용 · 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산나물류 · 수실류 · 수목부산물류) 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 · 관정 · 관수 · 자동화 시설 및 텁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속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2억원 ~ 10억원 이내 *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1억원 이내 *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 · 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비용(15% 이내) 등으로 구성 * 설계·감리 필요 시 기타비용으로 추진 가능 * 단, 단일사업(울타리설치 등) 의 경우 사업성격에 맞게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
기타	- 텁밥배지 생산시설 지원은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시 · 군 조합은 '19년부터 지원 제한 -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은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6.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실행 지침

### □ 사업 목적

- 단기간 규격화된 우량 조경수 대량 생산·공급기반 구축
- 조경수 시장수요 대응 및 임가의 소득 증대

### □ 추진 방침

- 조경수의 노지양묘에서 시설양묘 시스템으로 전환 유도
- 비닐하우스, 노지재배, 관수시설, 컨테이너 등 폐기자로 지원
- '10년 시범사업을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
- 컨테이너 재배시설에서 생산된 수목의 관리체계를 마련

### □ 지원 사업 내용

- 사업내용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
- 사업단가 : 50,000천 원/㎡(국고보조 10,000천 원)
- 보조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읍자 20%, 자부담 40%
- 사업주관 : 시·군·구 산림부서

### □ 추진 요령

#### ○ 지원 대상자 선정

- 조경수 생산자 중에서 컨테이너 대묘 생산이 가능한 자
- . 비닐하우스 내의 4~6㎡ 컨테이너 생산묘를 노지의 지중 대형컨테이너로 이식하여 대묘 생산이 가능한자
- 컨테이너 생산이력관리가 가능하고 컨테이너 재배 생산통계를 관리 할 수 있는 자
- 기타 사업주관부서에서 자체 우선순위 요건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
- 대상자 선정 시 고려 할 사항
  - 컨테이너 재배 시설지원 사업을 이해하고, 컨테이너 재배 생산 의지
  - 자부담 능력 및 자체적으로 추가 시설 부담능력
  - 재배시설(시비 및 관수) 관리 능력 등

## o 지원범위

- 비닐하우스, 노지재배, 전기시설, 관수·시비시설, 천테이너 및 컨테이너  
밭침대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일체 사업비를 기준
- 시설규모 기준

표 1. 시설양묘용 비닐하우스(07-단동-4) 형태 및 규격(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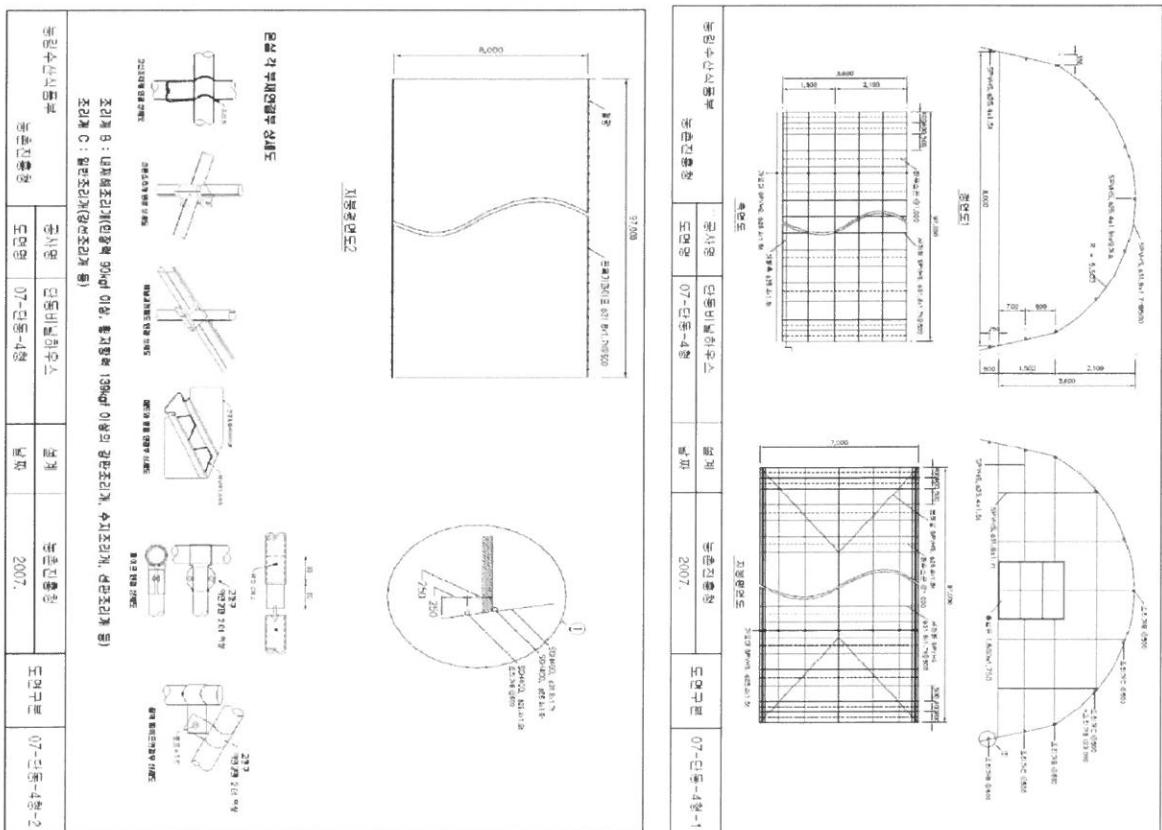
온실 종류	비닐하우스 규격				설계강도	시설비	비고
	폭	높이	길이	서까래			
07-단동-4	8.0	3.6	97	31.80×1.7t @50cm	9개 (25.40×1.5t)	48cm 37% 천원/m <sup>2</sup>	21.6 단동

## - 주요 시설 및 자재

### 가. 비닐하우스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에도 잘 견디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규격시설로  
반드시 SPVHS(비닐하우스 내재해 구조용 파이프) 마크가 있는 파이프를  
사용

\* 국내에서 2017년부터는 내재해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는 폭설이나  
강풍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농가가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시 반드시 내재해형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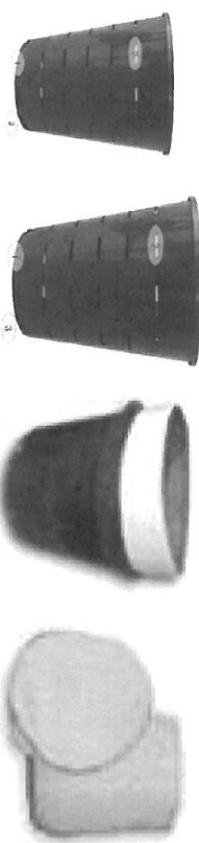
<그림 1. 시설양묘용 비닐하우스(07-단동-4형) 형태 및 규격(예시)>

#### 나. 컨테이너

조경수 재배용으로 개발된 용기로 뿌리돌림 현상 방지는 물론 세균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컨테이너이어야 함.

표 2. 조경수 시설 재배용 컨테이너(예시)

용기	용기 규격 (윗면*밑면*높이, cm)	총용적 (ℓ)	수량 (개)	비고
플라스틱 또는 천 용기	Ø32×Ø21.5×25 또는 Ø40×Ø25×30 전후	4~6	5,000	공인제품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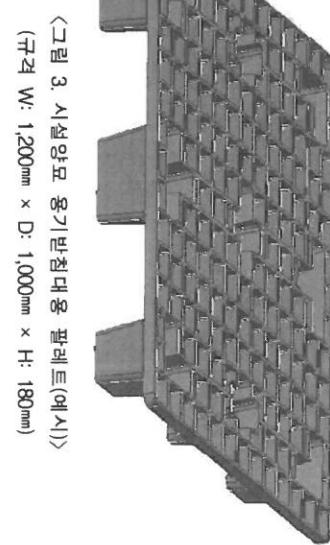
〈그림 2. 조경수 재배용 플라스틱/천 4~6 ℥ 용기(예시)〉

- ① 공기단근, 수분배출 및 측면 뿌리 유도용 개구선
- ② 뿌리발달 촉진용 개구선
- ③ 용기내부와 지면분리용 턱
- ④ 비이상적인 측면 뿌리방지선
- ⑤ 최하단부 뿌리 유도선

#### 다. 용기받침대(필요 또는 설치 시)

시설양묘시 용기를 놓을 수 있는 용기받침대는 용기내에서 자란 뿌리가 공기단근이 차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용기받침대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가 잘되어야 하며 공기의 유동이 자연스러워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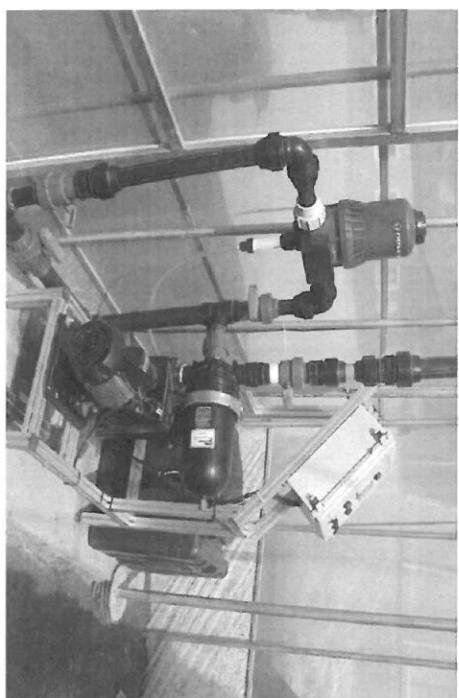
용기받침대는 최근에 시설양묘용으로 개발된 플라스틱 팔레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양묘용으로 제작된 칸살의 두께를 7mm(최대 9mm)로 최소화함으로써 받침대로 인한 뿌리돌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그림 3. 시설양묘 용기받침대용 팔레트(예시)  
(규격 W: 1,200mm × D: 1,000mm × H: 180mm)〉

#### 라. 관수 및 시비시설

시비시설은 관수시설에 연결하여 관수시 수압에 의하여 액비가자동으로 혼합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가격이 경제적인 반자동시스템 시비시설은 정밀·견고하여야 하며 강제관수라인으로 공급배관과 연결되어 있고 기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물만 공급할 수 있어야 함.



〈그림 4. 자동조절 양액 시비(예시)〉

## ○ 지원방법

- 차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 검토 후 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확장시 신청자에게 지원 확정사항을 통보

- 컨테이너 시설재배는 수목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기 위해 서는 비닐 허우스, 컨테이너, 컨테이너 반침대, 관수 및 시비시설의 규격 사용이 매우 중요하며, 상기지원 범위 기준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규격 및 기능 요건이 충족되면 현지 사업자의 재량으로 적정기종을 선택 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용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한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에 보조사업 정산신청 및 정산 확정

\* 사업완료시 시설사업비 집행에 따른 영수증 또는 컨レン더, 반침대, 관수 및 시시시설의 집행 확인서류 및 사진첨보관

## ○ 사후관리

-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5년)를 하여야 함.
- 지원자의 명부, 시설완료내역, 컨테이너 시설 활용 및 사후관리 등을 기재한 후 사후 관리대장 비치
- 컨테이너 재배 생산·공급 통계 관리대장 비치

## ○ 기타사항

- 기타 지원 세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 사업 자금집행 관리 기본규정」,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관련법규에 의함

- \* 토양 물리성 및 화학성 개량 및 토양산도 교정이 필요한 관상수 재배포지 지도를 받아 실시.
- \* 토양 물리성 및 화학성 개량이 필요한 포지를 대상으로 목탄분말 살포공종을 지원(4,500kg/ha, 4,500천원)
- 토양산도 교정은 토양조사 결과 토양산도 pH 5.5 이하인 포지를 대상으로 임상석회 살포공종을 지원(2,000kg/ha, 250천원)
- \* 토양산도 교정은 사전 전문가(국립산림과학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 7.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 □ 목적

- 계속된 연작으로 지역이 약화된 관상수 등 재배포지 토양의 물리성 및 화학성을 개량하고 산성화된 토양의 산도를 교정하여 우량한 관상수 생산을 추진

### □ 추진방침

- 토양개량제인 목탄을 사용하여 토양 물리성 및 화학성 개량
- 임상석회를 사용하여 산성토양의 토양산도 조절
- 토양개량제 살포요령 준수로 토양개량 효과 극대화

###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조경수 및 분자 등 관상수 생산자
- ha당 단비 : 4,750천원
- 임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 □ 추진요령

<목탄분말과 임상석회를 함께 지원하는 경우>

### ○ 대상지 선정

- 토양 물리성·화학성 개량 및 토양산도 교정이 필요한 관상수 재배포지

### ○ 실시요령

- 토양 물리성 및 화학성 개량이 필요한 포지를 대상으로 목탄분말 살포공종을 지원(4,500kg/ha, 4,500천원)
- 토양산도 교정은 토양조사 결과 토양산도 pH 5.5 이하인 포지를 대상으로 임상석회 살포공종을 지원(2,000kg/ha, 250천원)

<목탄분말만 지원하는 경우>

○ 대상지 선정

- 토양산도 교정이 필요하지 않은 관상수 재배포지

○ 실시요령

- 토양 물리성 및 화학성 개량이 필요한 포지를 대상으로 목탄분말  
살포공중반·자원(4,500kg/ha, 4,500천원)

□ 살포요령

○ 살포시기

- 목탄분말 : 시업 10일 전 포지 전면적에 끌고루 살포하고 경운한 뒤  
파종 또는 정식
- 임상석회 : 시업 1개월 전 포지 전 면적에 끌고루 살포하고 경운

○ 살포량

- 목탄분말 : 10a(300평)당 450kg
- 임상석회 : 불임 살포량 산정방법 참조

• 석회살포량 : 10a당 90kg

\* 토성 : 사토, 부식함량 : 5%미만, 토양산도 : pH 4.7→pH 5.5교정

• 석회살포량 : 10a당 180kg

\* 토성 : 사양토, 부식함량 : 5%미만, 토양산도 : pH 4.7→pH 5.5교정

• 석회살포량 : 10a당 270kg

\* 토성 : 양토, 부식함량 : 5%미만, 토양산도 : pH 4.7→pH 5.5교정

□ 토양개량제(목탄 및 임상석회) 공급

- 시] · 도별 자체실정에 맞게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참고 1>

석회살포량 산정 방법

□ 석회 질 비료 사용기준

(단위 : kg)

구 분	부식함량(%)			
	5%미만	5~10%	10~20%	20%이상
사 토	56	113	150~225	
사양토	113	169	225~300	
양 토	169	225	300~375	
식양토	225	281	375~450	
식 토	281	338	450~525	
부식토				450~750

\* 토양깊이 10cm까지 10a의 PH 1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석회량임

□ 석회 소요량 계산식 :  $C \times (A-B) \times D / 10$

- C : PH를 1단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석회량

- A : 개량하고자 하는 PH

- B : 개량전 PH

- D : 개량하고자 하는 토양의 깊이

예) 토양을 분석한 결과 PH가 4.7, 토성이 양토, 부식함·양이 5%미만인

토양을 토심 20cm까지 PH 5.5로 교정하고자 할 때 석회소요량은?

$$169 \times (5.5-4.7) \times 20 / 10 = 270.4\text{kg}/10\text{a}(2,704\text{kg}/\text{ha} \text{당})$$

\* 산림토양은 양토 또는 미사질양토임

## 8.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 잔디의 생육 증진과 토양 물리성 및 화학성 개량이 필요한 포지를 대상으로 수용성 규산염 살포공중을 지원

- 계속된 연작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산성화 등 토양의 화학성이 악화되고 있는 잔디재배지 토양의 물리성 및 화학성을 개량하고 토양 내 유효규산 함량과 토양산도를 교정하여 고품질 잔디 생산 추진

- 살포요령

- 살포시기

- 추진방침

- 토양개량제인 규산을 사용하여 토양 물리성 및 화학성 개량
- 규산을 살포하여 산성토양의 토양 내 유효규산 함량 및 토양산도 조정
- 토양개량제 규산과 수용성 규산염 살포요령 준수로 잔디 생육 증진

###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잔디 생산자
- ha당 단비 : 1,150천 원
  - 일상 규산질비료(SiO<sub>2</sub>, 25%) 2,000kg/ha × 5,500원/20kg = 550천 원/ha
  - 수용성 규산염(SiO<sub>3</sub>, 27% 액비 기준) 10,000cc/ha × 30,000원/500cc = 600천원/ha
- 대상지 선정
  - 규산 결핍(토양 내 유효규산 157mg/kg 이하), 산성(pH 5.5 이하)화된 잔디 재배포지
  - 실시요령
    - 토양조사 결과 토양 내 유효규산이 157mg/kg 이하 또는 토양산도 pH 5.5 이하인 포지를 대상으로 일상 규산질비료 살포공중을 지원

\* 토양 내 유효규산 함량과 산도 교정은 사전 전문가(국립산림과학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도를 받아 실시]